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9호, 2021. 7. 13, 일부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 1 ()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 3 (가)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 4 (가)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5 ()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1. 17.>
-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11. 17., 2004. 12. 10., 2006. 2. 2.,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 가. 삭제<2006. 9. 7.>
 -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다.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④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9. 7.>
[제목개정 2003. 11. 17.]

6 (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③시·도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2020. 12. 31.>

6 2()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본조신설 2014. 6. 5.]

7 ()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3. 11. 17.]

8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19. 4. 23.>

② 영 제13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각 호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시험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9 ()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4.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11 ()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1 2()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4. 4.]

12 ()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 2014. 6. 5.>

③ 삭제<2014. 6. 5.>

④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입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입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입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9. 4. 23.>

⑤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입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12. 31.>

13 ()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신설 2011. 1. 26., 2019. 4. 23.>

[제목개정 2011. 1. 26.]

14 () ①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입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

[제목개정 2019. 4. 23.]

15 ()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4. 23.>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입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입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입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6. 5., 2019. 4. 23.>

5., 2019. 4. 23.>

③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입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12. 31.>

[제목개정 2019. 4. 23.]

16 ()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1. 1. 26., 2013. 3. 23., 2014. 6. 5., 2014. 11. 19., 2017. 7. 26.>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신설 2011. 1. 26., 2019. 4. 23.>

[제목개정 2011. 1. 26.]

17 ()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18 ()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12. 31.>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3.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5.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6.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7.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②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3.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④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2. 무기를 지급받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⑤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19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5.]

20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 5.]

21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14. 6. 5.]

22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전문개정 2014. 6. 5.]

23 ()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전문개정 2014. 6. 5.]

24 ()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6. 5., 2021. 7. 13.>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13.>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3.>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13.>

1. 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 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0., 2009. 7. 1., 2021. 7. 13.>

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12. 31., 2021. 7. 13.>

24 2(가) ①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

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입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② 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⑥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5.]

24 3()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5.]

25 (가)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26 ()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27 삭제 <2014. 6. 5.>

27 2()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본조신설 2014. 1. 8.]

28 ()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 6. 5.>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 6. 5.>
[전문개정 2008. 12. 5.]

<제141호, 2001.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9호, 2003. 11. 17.>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59호, 2004. 12. 10.>(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호, 2006. 2. 2.>

이 규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45호, 2006. 9.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호, 2008. 3.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3호, 2008. 12. 5.>(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0호, 200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1호, 2010. 9. 10.>(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0호, 2011. 1. 2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0호, 2011. 4. 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7호, 2012. 5. 3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호, 2013. 3. 2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20호, 2013. 10. 22.>(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0호, 2014. 1. 8.>(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2호, 2014. 6. 5.>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2호, 2014. 11. 1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7호, 2014. 12. 10.〉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 시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호, 201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호, 2017. 7.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12호, 2019.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4호, 2020. 12. 31.〉(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269호, 2021. 7. 13.>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부터 적용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26>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4

비고: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4.12.10.>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 기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 한다)	3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1. 시설기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2. 강사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 목	시 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14.6.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장비	장비기준
1.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 이하의 호신용 봉
3. 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
4.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 이하, 길이 1,000㎜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5. 무전기	무전기 송신 시 실시간으로 수신 가능한 것
6. 안전모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석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7. 방검복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과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22>

호송경비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지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통지 내용	출발지				
	증착지				
	중간기착지	도내(지명)	관할경찰서		
		도외(지명)	관할경찰서		
	도급자(회사명)				
	주요호송품명				
	경비업무의 기간	, 부터 , 까지 (일간)			
	호송횟수	월 회			
경비원 명단	성명	직책	성명	직책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OO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경비업 []신규
[]변경 허가신청서
[]갱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출장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신청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자본		
	손해배상(공탁·보험·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15	16	1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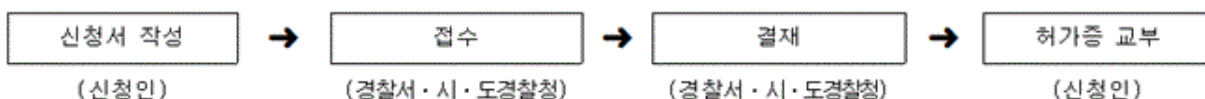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규 · 변경 허가신청 가. 법인의 정관 1부 나.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다. 경비인력 ·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갱신 허가신청 가. 허가증 원본 나.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 쪽)

제 호

허 가 증

1. 법 인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6. 허가경비업무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연 월 일	변경신고사항	확 인 자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1.>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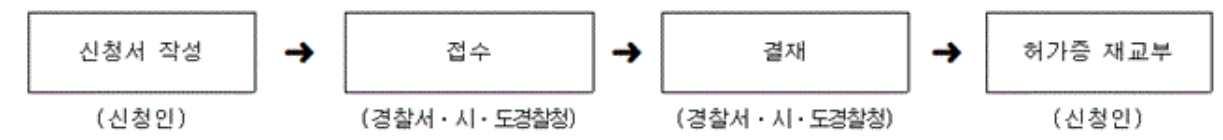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31.>

경비업 신고서

☐ 폐업
☐ 휴업
☐ 영업재개
☐ 휴업기간연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 내용	주소	(전화번호 :)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휴·폐업상황

계약 회사명	경비장소	경비원 성명	경비원에 대한 조치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업의 ☐ 폐업
☐ 휴업
☐ 영업재개
☐ 휴업기간연장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 내용	현재		
	변경 후		
	사유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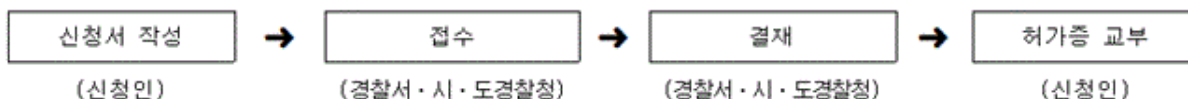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명칭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및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2. 31.>

특수경비업무 [] 개시 [] 종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경비업무 수행시설	시설명		
	주소지		
도급내역	도급기간	도급액	
	경비원의 수		
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23.>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응시번호	②응시종목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③선택과목	일반경비지도사 [] 소방학 [] 범죄학 []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응시자	④성명	(한자)			⑩사진 (3.5cm×4.5cm)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연락처	(주택)	(휴대전화번호)		
	⑧최종학력	※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학력 증명이 필요한 사람만 기재합니다.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⑨직업
⑪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 해당없음 []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 경력자 등				
⑫ 「경비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년도 제()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시험관리기관명) 귀하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제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제 회		①응시번호	⑩사진 (3.5cm×4.5cm)
경비지도사시험 응시표			
③성명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험관리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

- ①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응시종목: 해당하는 종목에 '√' 표시를 합니다.
- ③ 선택과목: 응시종목에 따라 선택과목 1개에 '√' 표시를 합니다.
- ④ 성 명: 한글로 적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 ⑤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⑥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상세 주소(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⑦ 연락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⑧ 최종학력: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⑨ 직업: 회사원, 공무원, 학생, 농업, 자영업, 무직, 그 밖의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
- 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여권용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 ⑪ 제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해당되는 사유에 '√' 표시를 합니다.
 - 1) 전 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 2) 경력자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⑫ 시험 응시 년도, 회차, 응시원서 제출 날짜, 이름, 서명(또는 날인)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⑬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자르는 선**응시자 주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 SD카드를 제거·삭제해야 하고, 메모리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등 기타 사용 불가 기기는 수험자 유의사항 참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그 밖에 시험일정, 운영, 기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교부일자

(보존용)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5>

경비지도사 자격증

(앞쪽)

제 호	사진
경비지도사 자격증 (자 격 종 별)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취 득 일 :	
위의 사람은 「경비업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 급 일)	
경 찰 청 장	직인

54mm×84mm [PVC(비닐)]

(뒤쪽)

유 의 사 항 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경찰관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1.4.4>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5>

제 호

일반(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원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제 호

[] 신임교육 이수
[] 배치폐지

성명		생년월일	
----	--	------	--

1. 신입교육 이수 확인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2. 배치표지 확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경비원 최종 배치폐지일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배치폐지일 : 년 월 일

100 100 100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지 인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

무기대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시설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배치사업장의 명칭		배치사업장의 소재지
--------------	--	------------

특수경비원 배치 인원	
----------------	--

대여 요청량	총기 종류	수량	탄종	수량

대여신청 사유	
---------	--

대여기간	
------	--

무기관리 방법	
---------	--

비고	
----	--

「경비업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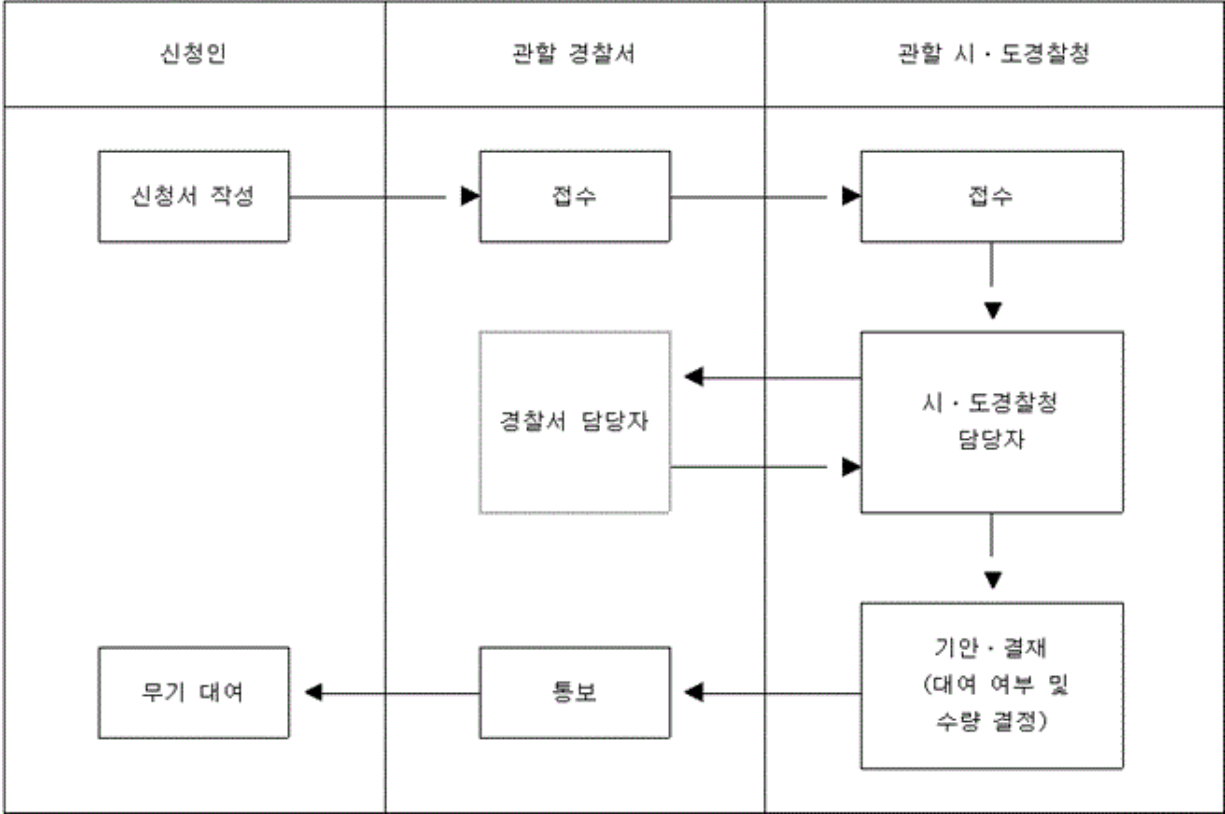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복장 사진	상의		하의		
표지장 사진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복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요령

수 개의 복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0. 12. 31.>

[]경비원 복장 등
[]출동차량 도색 등 **시정명령 이행보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시정명령 이행보고

시정 지시 사항

시정 결과

「경비업법」 제16조제4항,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복장 등·출동차량 도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정사항에 따른 시정결과 사진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수 개의 차량 디자인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0. 12. 31.>

출동차량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차량 사진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차량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수 개의 차량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20. 12. 31.>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소				
	취업(예정)직위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업체에 취업(예정)자인 (임원·경비원·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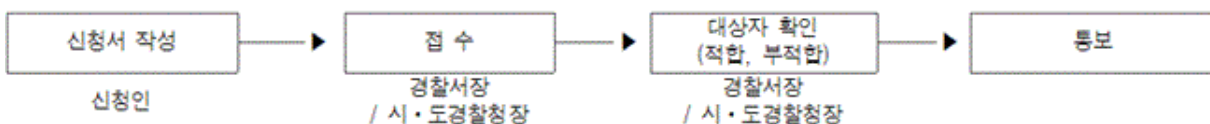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0. 12. 3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경비업체 ○○에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으로 취업한 사람(취업예정자)로서,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재 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관리번호		<u>경비원명부</u>									
성명											
주소											
배치지											
병역		군별				병과	입대 연월일	제대 연월일	군번	계급	
신체상태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건강상태	외모특징	취미	
재산		동산	부동산		재산총액		가옥				
가족관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보존용)

교우 관계	성 명	주 소		직업 및 직책	보증인	성 명	주 소
상 별					경 력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기 간	근무장소	
					~		
					~		
					~		
					~		
					~		
교 육 훈 련					~		
기 간	내 용	기 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13.>

경비원 [] 배치 [] 배치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장소(구체적으로 기재) (전화번호)			
경비원 배치(폐지) 내용	배치일시	배치폐지(예정)일시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경비원 명단	배치 경비업무	경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배치·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는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21. 7. 13.>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 칸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1) 귀하는 조현병·정동장애(情動障礙)·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2) 귀하는 치매·정신발육지연·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또는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단속기관	
	위반행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배치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동의일부터 최근 5년간 본인의 심신상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특수경비원으로 배치된 경우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라 배치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1. 7. 13.>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경비업체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경비지도사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경비원 배치 내용	배치 예정일시		배치허가의 요청 기간	
	집단민원현장의 유형 및 배치 예정 경비원 수			
	경비의 목적 또는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배치지 주소 및 경비원의 업무 활동의 범위(구체적으로 기재)			
	사용 예정 장비			
	경비계획			
경비업무 도급인	성명	연락처		
경비원 명단	연번	경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번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또는 배치될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 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경비계획 기재 또는 배치할 경비원의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는 선임한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21. 7. 13.>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경비업체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경비지도사	성명	자격번호	연락처	
배치장소	주소			
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연번	경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치폐지일시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OO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배치폐지 경비원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제 호

귀하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 . . 생)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의견>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인

(뒤쪽)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기 관

부 서 명		담 당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모 사 전 송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31.>

보내는 사람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주소

□ □ □ - □ □ □



과태료 납부 고지서 재증

받는 사람

귀하

□ □ □ - □ □ □

절 취 선

부과 내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주소	

산출 근거

세목	납기 내	납기 후
	20 년 월 일	
과태료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경찰서(인)

년 월 일 수납인

절 취 선

안 내 말 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납 부 자		실명번호			
금융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20 년 월 일		
합계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인)

년 월 일 수납인

<안 내 말 씀>

- ◆ 전면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제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제납하고 있고, 제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제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제납하고 있고, 제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제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1] 삭제 <2014.6.5>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2] 삭제 <2014.6.5>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3] 삭제 <2014.6.5>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4] 삭제 <2014.6.5>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도 5] 삭제 <2014.6.5>